준법경영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산일전기의 모든 경영활동이 국내외 법규와 기업윤리에 부합하도록 하는 준법경영의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준법경영: 회사가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별 제반 법규, 국제 규범 및 사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식을 말합니다.

2,법규: 산일전기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 조례, 규칙 및 회사가 가입한 국제 협약과 내부 지침 등을 포함합니다.

3.부패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뇌물 수수, 공금 횡령, 정보 유출 등)를 의미합니다.

4.이해관계자: 주주,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 정부 기관 등 회사의 준법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1.본 정책은 산일전기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지점, 자사 등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2. 회사는 공급망 내 협력사 및 파트너사에게도 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법규 준수를 독려합니다.

3. 본 정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정책 또는 국제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장 준법경영 실천 원칙

제4조 (법규 준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반부패, 공정거래, 노동, 환경 등 주요 경영 분야별로 세부적인 준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제5조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

1.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장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2. 어떠한 형태의 뇌물, 금품 수수, 부당한 접대나 편의 제공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고수합니다.

제6조 (이해충돌 방지)

1.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2. 임직원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7조 (자금세탁방지)

회사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 등 불법 자금의 이동 및 은닉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3장 준법 관리 체계 및 지원

제8조 (준법 지원 조직 및 내부통제)

1. 준법경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할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준법 실태를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9조 (신고 제도 및 제보자 보호)

1. 법규 위반이나 부당 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2.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제10조 (준법 교육)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맞춤형 준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준법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부 칙

1.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정책은 국제 협약, 주요 거래국의 정책, 국내외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